

제 2019-43호

외국환업무 등록증

회사명 에이치자산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17층
(유수홀딩스빌딩)

위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의 해당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함.

2019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수신 에이치자산운용

(경유)

제목 외국환업무등록 통지 (에이치자산운용)

1. 에이치자산운용이 우리 부에 제출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을 검토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 후 외국환거래법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제한·정지될 수 있으며, 명칭, 본점의 소재지 또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귀 사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세필증 사본 1부를 1주일 이내에 우리 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외국환업무 등록증 1부. 끝.

기획재정부장관



- 조지현 외환제도과장 전결 2019.8.13.
오재우

협조자

시행 외환제도과-950 (2019.08.13) 접수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전화번호 044-215-4758 팩스번호 044-215 / jahyun88@korea.kr / 비공개(7)